

●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5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09월 26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“매장문화재 표본조사:” 를 “표본조사:” 로, “발굴조사 조치” 를 “발굴조사 실시” 로, “아니하고” 를 “않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매장문화재 발굴조사: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.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가. 발굴조사 현황[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: 옛 구조물의 흔적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]

나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

제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발굴 현황[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]

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

3.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, 조치 완료기간을 포함해야 한다)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] 문화재 보존조치(매장문화재 발굴조사) 결과보고서
[]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허가번호 제 - 호 | 매장문화재명 | |
| 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 | 발굴 사유 | |
| 매장문화재 소재지 | 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 | 발굴면적 m ² |

| | |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발굴조사 기관명 | 조사단 | 조사단장 |
| 발굴기간 | | 책임조사원 |
| 현장조사일 일 | | 조사원 |
| | | 준조사원 |
| 발굴 비용 원 | 보조원 | |

| 출토유구 | 종류 | 시대 | 수량 | 중요 유물 | 비고 |
|--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| | | | | |

| 출토유물 | 종류 | 시대 | 수량 | 중요 유물 | 비고 |
|--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| | | | | |

| |
|----------------|
|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|
|----------------|

[]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보존조치(매장문화재 발굴조사) 결과를 보고합니다.

[]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보고자(신고자) 성명 _____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| | |
|------|---|
| 첨부서류 | 1. 문화재 보존조치(매장문화재 발굴조사) 결과보고서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발굴조사 현황[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: 옛 구조물의 흔적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] 나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2.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발굴 현황[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] 나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다.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만 첨부하며, 조치 완료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) |
|------|---|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장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구(遺構)의 보존을 담보하기 위하여,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해당 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 제출 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.